

---



#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2021. 12. 31(금)



#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 1.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방향

- 인권영향평가는 정책과 제도의 사전 및 사후 효과를 인권의 관점에서 검증함으로써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인권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인권경영관련 지표를 중요지표로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
- 이 같은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에서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4대 전략과제 중 핵심과제로 제시하여 추진할 예정
- 전라북도의 인권기본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과 사업추진 그리고 계획수립 등을 제시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 사회적약자 배려 관련 지원실적, 경영성과평가 평가위원으로 인권전문가의 참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세부사업으로 포함시킬 예정임
- 따라서 전북연구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2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사업 평가 진행
- 특히, 전북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영향평가의 관점과 세부 평가지표 등의 개선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그림-1〉 전라북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계획(안)

계획방향	관련 제도	세부사업(안)
제도개선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경영성과) 지표 2.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지침 3. 인권관련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경영성과) 지표개선(인권경영지표 의무포함)</li> <li>• 성과평가지침 논의, 사회적약자 배려 관련 지원실적</li> <li>• 경영성과평가 평가위원(인권관련 전문가 참여 의무화)</li> </ul>
인권경영강화	1. 출자출연기관 인권위원회 등 재반위원회 2. 출자출연기관 인권구제조치 관련 규정 3.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출연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li> <li>• 인권위원회 구성 여부 및 주요 결정사항 교육, 컨설팅</li> <li>•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계획 심의시 임직원 인권경영 사항 포함</li> </ul>
계획수립	1.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계획 2.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3. 출자출연기관 연간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타당성 검토시 인권경영 관련 사항 세부계획 제시</li> <li>• 설립타당성 심위원회 인권전문가 포함</li> <li>• 연간사업계획서 인권관점 자문 및 컨설팅</li> </ul>

- 특히,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의 인권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인권의 책임성 강화에 조응하여 인권증진의 주체로서 공공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가인권기본계획의 기반인 3차 인권기본계획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의 의무를 강화 하도록 인권경영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인권경영 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 책 수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기업의 양성평 등 경영지원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인권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같은 제도적 경향에 기초하여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에 인권 경영을 포함시켜 평가 진행하고 있고 전북연구원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세부지 표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추진
- 인권기본법안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신속하 고 적절한 구제절차가 제공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활동 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에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 추진

참고1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I. 지속가능 경영 (25점)	리더십(12점)	1. 경영층의 리더십 2. 전략경영	6 6		코로나19 가점항목 신설
	경영시스템(13점)	1. 조직인사관리 2. 재무관리	6 5	2	양성평등 노력 항목 신설로 5점에서 6점으로 조정 재정계획 적정성 항목 3점에서 2점으로 조정하여 8점에서 7점으로 조정
II. 경영성과 (45점)	주요사업(5점)	사업성과 적절성	5		코로나19 주요사업 대응노력 항목 추가
	수익성(8점)	영업수지비율 자기자본이익률		4 4	
	안정성(8점)	금융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4 4	
	생산성(7점)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4 3	
	성장성(7점)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4 3	
	고객만족성과(10점)	1. 고객만족도		10	
	III. 사회적 가치 (30점)	일자리확대(10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	5
사회적 책임(20점)		1. 소통 및 참여	4	1	고객 및 주민참여 항목 3점에서 2점으로 조정
		2. 윤리경영	2		3점에서 2점으로 조정
		3. 인권경영	2		지표 신설
		3. 재난안전관리	4	1	
4. 지역상생발전	4	2			
합 계			49	51	

## 2.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의 인권영향평가 로드맵에 맞춰 인권경영체계 수립을 시작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이후 연구원 인권위원회의 보고와 심의를 거쳐 진행
- 전북연구원은 2019년도에 인권경영계획 수립 이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실무단계의 사업으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를 확정함



- 전북연구원은 2019년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안)과 전북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안)을 심의하여 공표
- 인권경영위원회는 외부 3명(정영선 교수, 김진 변호사, 배인재 회장)과 내부 당연직으로 원장, 여성정책소장이 참여하여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지침의 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참고3

전북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성별	주요경력 및 소속 직위	비고
외부(3)	정영선	남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여	· 법률사무소 하륜 변호사	
	배인재	남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내부(2) (당연직)	권혁남	남	· 원장	
	이수인	여	· 여성정책연구소장	

- 인권경영위원회는 전북연구원 인권경영기본계획(2019. 9.5)과 전북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제21조에 근거하여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과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2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으로 인권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관련 지식 또는 연구원 사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지침 제29조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동지침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과 사업운영의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는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작성
- 전북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확정을 거쳐 인권영향평가 위원 위촉 그리고 위촉된 인권영향평가 위원 대상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함
- 특히,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원내에 인권영향평가 실무팀(연구기획부장)을 구성하여 실무팀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위원 위촉, 평가관련 서류 작성 및 보완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위탁 등의 사업 진행
- 다만,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는 연구원에서 처음 수행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위원들 간의 논의와 회의 등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수차례 사전 회의 진행

#### 참고4

##### 전북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 ⑥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로드맵

구 분	내 용	일 정
인권경영 협약식 체결	·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협약 실시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 인권센터	'18. 11월
↓		
인권경영추진 계획수립	·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계획 수립	'19. 9월
↓		
조직 및 시스템마련	· 인권경영 추진 전담부서 및 협업부서 지정	'19. 9월
↓		
인권경영컨설팅 실시	· 인권경영 매뉴얼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가) 컨설팅 실시 ※ 외부전문기관(가) 자문 등 인권경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	'19. 9월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19. 10월
↓		
인권경영 체제구축	· 인권현장 마련 · 인권경영 이행지침 마련 · 인권피해 구제절차 등 마련	'19. 10월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인권경영 선언 * 공표전 최고의결기구 승인	'19. 12월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기관운영 등 인권영향 평가 실시	'20. 12월
↓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 인권영향평가 평가위원 위촉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간	'21. 11~

-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에 수립된 인권경영 로드맵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고, 2020년 12월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에 이어 2021년도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인권영향평가 위원 위촉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절차로 진행
- 2020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에 기초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 최종 인권영향평가 지표(안)를 1차 검토하였고, 1차 검토안을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의 세부평가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를 대체로 준용하되 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와 내용은 삭제하여 최종 지표안 결정

### 3. 인권영향평가 점검기준

-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권영향평가의 점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준 확정단계로서 연구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지표를 수정하고 관련 지표에 대한 점검과 자문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최종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 전북연구원은 1단계의 인권영향평가 점검기준의 확정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여 최종 확정
- 두 번째 단계는 확정된 인권영향평가의 점검기준을 토대로 인권영향평가TF를 구성하여 인권영향평가의 각 영역별 평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
- 세 번째 단계는 인권영향평가 TF를 통해서 인권영향평가를 각 분야별 그리고 각 지표별로 실시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확정된 점검지표와 구성된 인권영향평가 TF팀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임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촉된 TF위원들이 모든 영역을 평가하지 않고 각 영역별로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영역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함
-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평가영역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단계로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차후연도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사항에 반영하는 환류의 과정으로 진행함
- 전북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기준의 확정과 인권영향평가 위원 위촉 등의 제반절차를 2020년 11월부터 진행

#### 참고6

#### 인권영향평가 세부추진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점검(평가)기준 확정 (인권영향평가 지표)	인권영향평가 TF구성 (평가단 구성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실행)	결과보고 및 환류
주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조직 특성반영 세부평가지표 수정</li> <li>· 평가지표(안) 자문 및 심의(인권경영위원회)</li> <li>· 세부평가지표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내 운영위원회 중심 인권영향평가 TF구성</li> <li>·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내용 검토 및 평가계획(일정)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담당영역별 점검자 결정</li> <li>· 인권영향평가 점검지표별 인권영향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li>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원장, 인권경영위원회)</li> </ul>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확정지표

분야	변경	변경내용	최종
인권경영체계 구축	1개 삭제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관련 유사지표 1개 삭제	29개
고용상의 차별	2개 삭제	· 고용상의 차별항목 1개 지표 추가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개 지표 삭제	17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현행유지		5개
강제노동의 금지	현행유지		11개
아동노동금지(삭제예정)	전체삭제	· 연구원 업무특성에 맞지 않아 전체 항목 삭제 필요	0개
산업안전보장	현행유지		17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행유지		9개
주민의 인권보호	현행유지		9개
환경권보장	현행유지		10개
소비자인권보호	현행유지		9개

분야	변경	변경내용	사유
인권경영체계 구축	삭제	·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 인권영향평가 관련 2개 문항 중복으로 한 개 지표 삭제	중복 지표
고용상의 차별	추가	·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여성근로자보호
	삭제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은 현지의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연구원 특성반영
아동노동금지(삭제예정)	삭제	· 총 14개 지표 전체 삭제	연구원 특성반영

-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요 주표는 그대로 준용하되 연구원의 특성에 맞춰 주요 지표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평가영역중에서 인권경영체계구축과 고용상 차별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고, 아동노동금지 영역은 연구원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아 전체 평가영역을 삭제함
- 이외에는 고용상의 차별영역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확대라고 하는 정부 정책 동향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에 의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세부지표로 포함하는 등 여성근로자 보호지표를 추가함
- 이를 통해서 전북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기존 143개에서 26개 지표를 삭제하고 1개 지표를 추가하여 총 116개 지표로 잠정 확정하였고, 수정변경된 지표에 대한 확정 은 연구원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 4.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9 영역별 평가 각 표별 7명의 점검개수는 812개이고 각 영역별로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203개, 고용상 비차별 119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77개, 강제노동금지 63개, 산업안전보장 91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와 주민의 인권보호가 각각 91개 등으로 구성

참고10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이 슈	답 변 결 과									
	예 (적정)	보완필요 (다소부적정)	아니요 (부정적)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56	76.8	4	2.0	0	0.0	43	21.2	0	0.0
2 고용상의 비차별	112	94.1	1	0.8	0	0.0	0	0.0	6	5.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9	54.3	0	0.0	0	0.0	13	37.1	3	8.6
4 강제 노동의 금지	63	81.8	0	0.0	0	0.0	2	2.6	12	15.6
5 산업안전 보장	54	85.7	3	4.8	3	4.8	2	3.2	1	1.6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6	61.5	5	5.5	0	0.0	17	18.7	13	14.3
7 주민의 인권 보호	53	58.2	4	4.4	0	0.0	11	12.1	23	25.3
8 환경권 보장	27	38.6	9	12.9	4	5.7	27	38.6	3	4.3
9 소비자 인권 보호	53	84.1	5	7.9	0	0.0	3	4.8	2	3.2
합 계	593	73.0	31	3.8	7	0.9	118	14.5	63	7.8

이 슈	보완 및 미준수 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환경의 장기적 재검토 및 개선</li> <li>· 구제절차의 접근과 이용</li> <li>· 협력기관과 기업활동도 인권영향평가 범위 포함</li> <li>· 인문환경연구소의 전문가 참여</li> </ul>
2 고용상의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li> </ul>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5 산업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2)</li> <li>· 연구원의 작업장 안전장구와 시설의 위생적 관리</li> <li>·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산업재해 관리</li> <li>· 유해물질로부터 연구원의 안전권 보호노력</li> </ul>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계약에 인권보호를 위한 의무이행 강조</li> <li>· 협력기관과 계약시 인권보호준수를 위한 요구</li> <li>· 연구원 보안담당직원의 인문침해 예방 조치</li> <li>· 외주계약시 인권보호준중 내용 계약서 명시</li> <li>· 외주기관의 인권보호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li> </ul>
7 주민의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li> </ul>
8 환경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계획수립(연구원과 의료시설과 접근성(2))</li> <li>· 환경정보의 체계적 수립(3)</li> <li>·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수립(2)</li> <li>· 환경성과개선을 위한 노력</li> <li>· 환경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li> <li>· 환경훼손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li> </ul>
9 소비자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li> <li>· 고객정보의 수집 관리 지침의 마련</li> <li>·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의 책임자 지정</li> </ul>
합 계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세부지표 평가결과

이 수	답 변 결 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헌장 선포	37	2	0	3	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8	1	0	6	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29	0	0	6	0
	인권경영성과	21	0	0	28	0
	구제절차 마련	41	1	0	0	0
2 고용상의 차별	고용상 차별	35	0	0	0	0
	고용상 남녀차별	49	0	0	0	0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20	1	0	0	0
	외국인 근로자 차별	8	0	0	0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5	0	0	13	3
	노동조합부재시 대안적 조치	14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금지	56	0	0	0	0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7	0	0	2	12
5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30	0	3	1	1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24	3	0	1	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28	0	0	0	7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0	1	0	0	0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기업 등의 인권침해예방	6	2	0	13	0
	모니터링 실시	2	2	0	4	6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8	3	0	7	0
7 주민의 인권 보호	지역주민 인권보호의 존중보호	21	0	0	1	20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	14	1	0	3	3
8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6	6	2	19	2
	비상계획 수립	21	3	2	8	1
9 소비자 인권 보호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9	0	0	0	2
	고객 사생활 보호	34	5	0	3	0
합계		593	31	7	118	63

- 각 영역별 평가결과를 보면, 인권경영체계 구축은 총 203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걱정이 156개로 전체 응답의 76.8%를 차지하였고, 다소 부정적이 4개(2.0%)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고용상의 차별에서는 총 119개의 지표 응답값 중에서 걱정이 112개, 다소부정적 1개, 해당없음 6개로 걱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측정응답값의 94.1% 차지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장은 대부분 걱정으로 평가되었고, 다소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지표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장 영역에서는 걱정하다는 응답값이 54개로 전체 응답값의 81.8%로 나타났고, 다소 부적정하다는 응답은 3개, 그리고 부정적하다는 응답도 3개로 나타나 6개 정도의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영역에서는 총 91개 지표측정값에서 걱정하다는 응답이 56개로 전체 측정값의 61.5%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주민의 인권보호영역에도 총 91개의 측정값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53개로 전체 응답값의 58.2%정도 였고 부정적하다는 응답이 3개로 전체 응답값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인권보호영역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특히, 환경권 보호의 영역에서는 총 70개의 측정값 중에서 적정하다는 응답값이 27개밖에 되지 않아 전체 응답값의 38.6%로 다른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환경권보호영역에서는 비상계획의 수립이나 환경성과개선을 위한 노력, 환경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의 실시가 미흡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마지막으로 소비자 인권보호 영역에서는 총 63개의 측정값 중에서 적정하다는 응답값이 56개로 전체 응답값의 적정비율이 83.1%정도로 다른 지표영역보다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제시됨

참고12

인권영향평가 기타 요구개선사항

이 슈	주요 개선요구사항
환경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은 전북연구원이 인권영역을 추진하는 2년차로 인권영역 성과와 관련된 뚜렷한 정보가 미흡하고,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지표 중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환경권 보장'에서 관련 정보 없음과 일부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보임</li> <l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자문과 관련한 자료 미흡으로 해당 지표 평가 어려움 - 관련자료 보완 필요</li> <li>·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평가위원의 구성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 구성과 평가기간 등에 대한 공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연구원의 인권영역의 제도화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인권영역성과보고서 등의 관련자료 마련 등이 필요</li> <li>· 연구원의 환경경영체제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환경영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이 필요</li> <li>·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는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의료진의 확보는 안되어 있음. 다만 인근지역에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 비상시 구급차의 원활한 진입로 확보 필요</li> </ul>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지표 문항의 일부 내용은 연구기관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이를 통해 연구원의 내·외부인 대상 실질적인 인권경영·인권친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li> </ul>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 관련 증빙자료 및 자문의견 보완필요</li> </ul>
결사 및 단체교섭권 자유보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차원에서 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와 조합과 관련한 지원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관련정보 미흡</li> </ul>
기타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으로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마련해 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인권영역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기관 및 업체, 지역주민 등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li> <li>· 다만,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내용 구성과 인권영역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절차 등이 마련된다면 향후 도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li> </ul>

## 5 향후 조치계획

-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적정한 지표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2022년 연구원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보완 및 조치예정
-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구체절차의 규정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확대를 통해 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인권경영현장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의로서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보완 예정
- 또한 산업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이 있는 시설물을 개 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외주기관과의 계약시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이 계약서에 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 예정

참고13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향후 조치계획

이슈	보완 및 미준수 사항	조치계획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현장의 정기적 재검토 및 개선</li> <li>· 구체절차의 접근과 이용</li> <li>· 협력기관과 기업활동도 인권영향평가 범위 포함</li> <li>· 인권경영현장의 전문가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기본계획 및 인민법 준용하여 개정검토</li> <li>·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규정검토와 정기교육 실시</li> <li>· 협력기관 계약시 인권관련 규정 삽입 검토</li> <li>· 인권경영현장 개정시 전문가위원회 구성 운영</li> </ul>
고용상의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상태 정기 모니터링 실시</li> <li>* 장기간담회 등을 통한 임금 개선 노력 병행</li> </ul>
산업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li> <li>· 연구원의 작업장 안전장구와 시설의 위생적 관리</li> <li>·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산업재해 관리</li> <li>· 유해물질로부터 연구원의 안전권 보호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카페 등 장애인접근이 어려운 공간에 대한 개 보수 추진(경사로 설치 등)</li> <li>· 연구원 각 동별 제세동기 등 안전장구 설치</li> <li>· 전문가 참여한 산업안전진단 정기 실시</li> <li>· 유해물질 방출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li> </ul>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계약에 인권보호를 위한 의무이행 강조</li> <li>· 협력기관과 계약시 인권보호준종을 위한 요구</li> <li>· 연구원 보안담당직원의 인권침해 예방 조치</li> <li>· 외주계약시 인권보호준중 내용 계약서 명시</li> <li>· 외주기관의 인권보호여부에 대한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기관 계약시 인권관련 보호조항 삽입여부 검토</li> <li>· 연구원 보안담당관 지정 및 정기적 교육 추진</li> <li>· 외주계약시 계약서 일반양식 개선 검토</li> </ul>
주인의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홈페이지 등 활용 지적재산권 상세설명 검토</li> </ul>
환경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계획수립(연구원과 의사시설과 접근성)</li> <li>· 환경정보의 체계적 수립</li> <li>·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수립</li> <li>· 환경성과개선을 위한 노력</li> <li>· 환경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li> <li>· 환경훼손 자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환경관련 지표에 대한 재점검 후 지표 수정보완</li> </ul>
소비자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li> <li>· 고객정보의 수집 관리 지침의 마련</li> <li>·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의 책임자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내실화</li> <li>· 고객정보(자문위원DB, 심의위원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li> <li>· 고객정보 책임자의 개인정보 관리교육 강화</li> </ul>

(별지 제6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평가연월일	20 . . .

# 인 권 영 향 평 가

평 가 자	
-------	--

## 전북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 종합통계표

	이 슈	답 변 결 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56	4	0	43	0
2	고용상의 비차별	112	1	0	0	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9	0	0	13	3
4	강제 노동의 금지	63	0	0	2	12
5	산업안전 보장	54	3	3	2	1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6	5	0	17	13
7	주민의 인권 보호	53	4	0	11	23
8	환경권 보장	27	9	4	27	3
9	소비자 인권 보호	53	5	0	3	2
합 계		593	31	7	118	63



## □ 세부 평가 지표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헌장 선포	1	연구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7	0	0	0	0	
	2	인권경영헌장은 연구원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7	0	0	0	0	
	3	연구원의 인권경영헌장은 연구원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5	1	0	1	0	
	4	연구원의 인권경영헌장은 해당 연구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7	0	0	0	0	
	5	인권경영헌장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7	0	0	0	0	
	6	인권경영헌장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4	1	0	2	0	
소 계		37	2	0	3	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7	0	0	0	0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4	0	0	3	0	
	3	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4	0	0	3	0	
	4	연구원이나 협력기관 및 기업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6	1	0	0	0	
	5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0	0	0	0	
소 계		28	1	0	6	0		
인권경영 제도화 조치	1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7	0	0	0	0	
	2	연구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4	0	0	3	0	
	3	연구원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4	0	0	3	0	
	4	연구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0	0	0	0	
	5	연구원 또는 협력기관, 기업의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대	7	0	0	0	0	

		응한다.						
소 계			29	0	0	6	0	
인권경영 성과	1	연구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3	0	0	4	0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0	0	4	0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0	0	4	0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3	0	0	4	0	
	5	보고는 연구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3	0	0	4	0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3	0	0	4	0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3	0	0	4	0	
소 계			21	0	0	28	0	
구제절차 마련	1	연구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7	0	0	0	0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7	0	0	0	0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6	1	0	0	0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7	0	0	0	0	
	5	피해자가 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7	0	0	0	0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7	0	0	0	0	
소 계			41	1	0	0	0	
합 계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용상 비차별	1	연구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2	연구원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7	0	0	0	0	
	3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4	연구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5	연구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소 계			35	0	0	0	0	
고용상 남녀비차별	1	연구원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7	0	0	0	0	
	2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7	0	0	0	0	
	3	연구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4	연구원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5	연구원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0	0	0	0	
	6	연구원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7	0	0	0	0	
	7	연구원은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나 노동자의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7	0	0	0	0	추가
소 계			49	0	0	0	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	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0	0	0	0	
	2	연구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구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0	0	0	0	
	3	연구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6	1	0	0	0	
소 계			20	1	0	0	0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4	0	0	0	3	
	2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0	0	0	3	
소 계			8	0	0	0	6	
합 계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1	0	0	5	1	
	2	연구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0	0	4	1	
	3	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2	0	0	4	1	
노동조합 부재시대안적 조치	1	연구원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연구원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헌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7	0	0	0	0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0	0	0	0	
소 계			19	0	0	13	3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강제 노동 금지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7	0	0	0	0	
	2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7	0	0	0	0	
	3	연구원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7	0	0	0	0	
	4	연구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7	0	0	0	0	
	5	연구원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7	0	0	0	0	
	6	연구원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7	0	0	0	0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7	0	0	0	0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 전통지 이후에 연구원을 그만둘 수 있다.	7	0	0	0	0	
소 계			56	0	0	0	0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	연구원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연구원이나 협력연구원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2	0	0	1	4	
	2	협력연구원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2	0	0	1	4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3	0	0	0	4	
소 계			7	0	0	2	12	
합 계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항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작업장 안전	1	연구원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6	0	1	0	0	
	2	연구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7	0	0	0	0	
	3	연구원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7	0	0	0	0	
	4	연구원은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7	0	0	0	0	
	5	연구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측정을 실시한다.	3	0	2	1	1	
소 계			30	0	3	1	1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6	0	0	1	0	
	2	연구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7	0	0	0	0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0	0	0	0	
	4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4	3	0	0	0	
소 계			24	3	0	1	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	연구원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0	0	0	0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	0	0	0	4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7	0	0	0	0	
	4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4	0	0	0	3	
	5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0	0	0	0	
산	1	연구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	7	0	0	0	0	

업 재 해 피 해 근 로 자 지 원		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다.	7	0	0	0	0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6	1	0	0	0
소 계			20	1	0	0	0
합 계							

## 분야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협 력 기 업 등 의 인 권 침 해 예 방	1	연구원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3	0	0	4	0	
	2	연구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2	1	0	4	0	
	3	연구원은 협력연구원과 계약 시 인권 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1	1	0	5	0	
소 계			6	2	0	13	0	
모 니 터 링 실 시	1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기타 주요 협력기업 및 기관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	1	0	2	3	
	2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기관 및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1	1	0	2	3	
소 계			2	2	0	4	6	
보 안 담 당	1	연구원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6	1	0	0	0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연구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7	0	0	0	0	
	3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3	1	0	3	0	
	4	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한다.	2	1	0	4	0	
소 계			18	3	0	7	0	
합 계								

## 분야 7. 주민의 인권보호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	관련 법령에서 연구원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 를 준수한다.	7	0	0	0	0	
	2	연구원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 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 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 한다.	2	0	0	1	4	
	3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 지 않는다.	3	0	0	0	4	
	4	연구원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3	0	0	0	4	
	5	연구원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 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 절한 보상을 해준다.	3	0	0	0	4	
	6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 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3	0	0	0	4	
소 계			21	0	0	1	20	
지역주민의	1	연구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 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6	0	0	1	0	

지적재산권 보호	2	연구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6	0	0	1	0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2	1	0	1	3	
소 계			14	1	0	3	3	
합 계								

분야 8.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2	0	0	5	0	
	2	연구원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0	2	0	5	0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0	2	2	3	0	
	4	연구원은 연구원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1	0	2	2	
	5	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2	1	0	4	0	
소 계		6	6	2	19	2		
비상계획 수립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1	0	4	0	
	2	연구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0	0	0	0	
	3	연구원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3	0	0	3	1	
	4	연구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사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6	0	0	1	0	
	5	연구원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3	2	2	0	0	
소 계		21	3	2	8	1		
합 계								

## 분야 9.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	연구원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6	0	0	0	1	
	2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환불, 서비스 등에 대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6	0	0	0	1	
	3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 제공한다.	7	0	0	0	0	
소 계			19	0	0	0	2	
고객 사생활 보호	1	연구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2	0	0	0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5	1	0	1	0	
	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5	1	0	1	0	
	4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6	0	0	1	0	
	5	고객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7	0	0	0	0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6	1	0	0	0	
소 계			34	5	0	3	0	
합 계								